

ㄱ

ㄴ

[2012.1.1] [23466 , 2011.12.30,]

() 02 - 2110 - 7231

1 < 2010.9.29 >

1 () ㄱ

[2010.9.29]

2 () . < 2011.11.1 >

1. " " 가 .
가. , ,

. 가

2. " " (가 가
) , ㄱ 41
2 7 가 가

3. " " , 15 1 2
가. :

, " " () ㄱ
" ㄴ ,
" ㄱ 3 , "

x

x

. :
1 2

(가)
가

[2010.9.29]

2 2() ㄱ " ㄴ 12 3 ㄴ (" "

[2010.9.29]

3 () 3 1 " "

- 1. 가
 - 2. (" ")
- 3 2

- 1.
 - 2. , (" " ") ,
- (" ")

[[2010.9.29](#)]

4 () 「 」 22

(" ") . <

[2011.12.30](#)>

[[2010.9.29](#)]

5 ()

「 」 10 (" ")

)

[[2010.9.29](#)]

2

6 () 8 1 3 " "

가 . < [2011.11.1](#) >

- 1. 「 」 2 7
- 2. 「 」 9
- 3. 「 」 2 3
- 4. 「 」 2 4
- 5. 「 」 2 1 2
- 6. 「 」 27

8 2
8 3

가 7

[[2010.9.29](#)]

7 () 9 1 " "

9 1 6 1

9 1
30

3 「 」 5 1 가 15

[2010.9.29]

8 () 가

[2010.9.29]

9 () 12 가
14 , 6 14

1. ()

2.

3.

4. ()

5.

6. 「 」 12

[2010.9.29]

3

10 () 가, 「 가
, 가 가 , 「 가
(原受給人)

1

1. ,

2. , 가 가

3

[2010.9.29]

11 () 13 6 (" ")

1. (" ") 6 30 3
가

2. 6 30 3 가
가

(伐木材積量)

1. 100 90 100 90

2. (9
 1)
 = + { (9
 1) × }

[2010.9.29]

12 () 14 1 . < 2011.3.30 >

1. 가. 가 150 : 1 25
 가 150 「 」 12
 : 1 45
 가 150 1 : 1 65
 가 1 가 가
 : 1 85
 2. : 1 11 가
 1 1 , 「 」 2 2
 1 1 9 1 가
 9 1 , 8
 1 1 2 가

[2010.9.29]

13 () 14 3 (" " 「
) (" ")
 」 9 1

[2010.9.29]

14 () 가 14 3 가
 (" ")
 1
 1. 가
 2. 가
 3. 1 2

[2010.9.29]

15 () 15 2 " "

1. 8 1 2 2
40

2. 가 20
15 2 (" ") 1 2
2 1 3 가 , 7 1
6 30
6 30 3 1 가
가

[[2010.9.29](#)]

16 () 15 2 " "

100 85 100 75
[[2010.9.29](#)]

17 () 15 2 (" ") 6 30
")

1. : 16 3 1 (" ") 1 6
[19 2 17 1 (" ")
2 1]

2. 2 : 16 9 1 2 (" "
") [19 2 19 1 (" "
")]

3. 3 :

(3 ×
6)
(가 3)

15 2
3 7 1 6 30 (가)

ㄱ 72 87 1 3
가 2

3

[2010.9.29]

18 () 15 2 1
15 2

[2010.9.29]

19 () 16 1 (" ")
가

[2010.9.29]

19 2() 16 2 2 " "

- 1. ()
- 2.

[2010.9.29]

19 3() 16 4 3 "

- 1.
- 2. 「 」 74 1 2 가
- 3. 가

[2010.9.29]

19 4() 16 5 " 「 」 46 1
" 19 3
1

[2010.9.29]

19 5() 16 10 1 2 가

- 1.
- 2. 가 (「 」 13)
- 3. 가 (「 」 14)
- 4. 가 (「 」 9)
- 5.
- 6.

16 10 2 가 가

1.

2. 가 (ㄱ ㅅ 13)

3. 가 (ㄱ ㅅ 14)

4.

1 2 5

16 10 3 가

1.

2. (ㄱ ㅅ 13)

3. 16 3 2 2

16 10 3 "1 60 "

ㄱ ㅅ 3 1 2 1 (ㄱ ㅅ)

16 10 4 가

1.

2. 가 (ㄱ ㅅ 14)

3.

16 10 5 " 가 "

.< 2011.12.30 >

1.

2.

3.

16 10 5 가 6 가 가

1.

2.

1 4 , 6 8

[2010.9.29]

19 6() 16 10 8 " "

가 10

[2010.9.29]

20 () 가

[2010.9.29]

21 () 17 1 " "

100 70 100 130

[2010.9.29]

22 () 17 3 4 ,

- 1. 1 : 1 1 3 31
- 2. 2 : 4 1 6 30
- 3. 3 : 7 1 9 30
- 4. 4 : 10 1 12 31

- 1. 7 1 가
- 2. 6 가

- 1. 1 2 3 31 가 : 6 30
- 2. 4 1 6 30 가 : 9 30

- 1. 1 : 4
- 2. 3 : 가

17 1
15

1 5

[2010.9.29]

23 () 17 5 (更正請求)

- 1.
- 2.
- 3.
- 4.
- 5.

1 2

[2010.9.29]

24 () 18 1

20

1 가 31 3
23 「 」 12 (" 가 ") 18
1 가

3 가 가 30

[2010.9.29]

25 () 18 2 " " 100 30

[2010.9.29]

26 () 19 1 19 7
20 23

[2010.9.29]

27 () 20 " 가

[2010.9.29]

28 <2010.9.29>

29 <2010.9.29>

30 <2007.3.27>

30 2() 22 2 1 " (戰禍),
" , 100 30
22 2 1

[2010.9.29]

30 3() 가 22 2 2
(45 1)
) 5 5

[2010.9.29]

30 4() 가 22 2 3 250
250

[2010.9.29]

31 () <2007.3.27> 「 」 89 .<

2010.9.29>

23 1 3

2010.9.29>

23 4 " " 「 」 30 2 가 .< 2010.9.29>

32 (가) 24 1 " " .
 1. 가 3
 2. 16 10 1 2 가

[2010.9.29]

33 () 25 1 가 , 1
 1 12 가 , 1
 1 1 12 가 .
 1 36 36 .
 25 1 " " .
 1. <2011.12.30>
 2. , 가 26
 3. <2011.12.30>
 4. ,

[2010.9.29]

34 () 26 1 1 가 가 . .
 . . . , 가 . . (. . .)
 100 50 (. ,)
) 1
 가
 26 1 2 (17 3)
)
 가 , 100
 10 가
 1. 가 100 50
 2. (가
) 100 50 가
 1 2 가
 26 1 1 2 가
 가

[2010.9.29]

35 (가) 26 2
 30 .

[2010.9.29]

36 <2007.3.27>

37 () 28 2 ㄱ 6 (")

")

- 1.
- 2.
- 3.
- 4.

1

가 ,

[2010.9.29]

38 () 37 1

3

, 3

3 가

1

[2010.9.29]

39 ()

2

1

[2010.9.29]

40 () 28 2

가

[2010.9.29]

40 2(가) 28 3 1 2

가 (價額)

1

가 「

」 60

66

가

가

[2010.9.29]

40 3() 28 3 2

30

28 3 2

가

1

[2010.9.29]

40 4() 28 6 1

() , ,

) , ,

가

28 6 1

"

"

1. (" ") 100 30

2. 「 」 243 가

1.

2.

1 41 4 1

2 , 가

15

1 3

[2010.9.29]

41 3() 29 2 1 "

"

1. 29 2 1 1 2 (" ")

2. 가

가.

[2010.9.29]

41 4()

1

[2010.9.29]

42 ()

31 5

, 「 」 9 「 」 31 1 1

(.가) 「 」 95

(" ") "), 「 」 17

(" ") 「 」 24 (")

")

[2010.9.29]

43 ()

「 」 78 (" ")

[2010.9.29]

43 2() 32 2

[2010.9.29]

4

44 () 33 1 " "

1. 가 가

2. 「 」 5 2 3

[2010.9.29]

45 () 33 1
가 . (" ")

가 300

가 1

1

14

[2010.9.29]

46 () 33 1

1. 16 10

2. .

3.

4. . .

5. 가

[2010.9.29]

47 (가) 33 2

가

1. 44 1 : 가 가

2. 44 2 : 44 2

3. :

4. (" ")

1.

2.

3.

4.

5.

가 33 2

가

33 3 "

"

1.

2.

33 3 가

7

가 , 33 4

30

[2010.9.29]

48 (가) 33 5

가 , 1 가 .

- 1. 가
- 2. 2
- 3.
- 4.

1 가

[2010.9.29]

49 () 33 5

가 .

[2010.9.29]

50 () 34 ,

[2010.9.29]

51 () 36

- 3
- 1.
- 2.
- 3.
- 4.
- 5. 52
- 6. ,
- 1 「 」 2 1 .

[2010.9.29]

52 () 37 (

- 1. 가 30 ,
(" ")
- 2. 가 30 (" ")
- 3. 가 30 (" ")

. < 2011.12.30 >

2 33 4
15
가 28

2

45 3

가 (33 4

)

< 2011.12.30 >

[2010.9.29]

53 ()

100 50

[2010.9.29]

54 ()

가

2

1

[2010.9.29]

5 < 2010.9.29 >

55 (. .) 44 45 1 " "

- 1.
- 2.
- 3.
- 4.

44

[2010.9.29]

56 () 46

- 1.
- 2.
- 3. 1 2

1

[2010.9.29]

56 2() 46 2 1

5 31

46 2 1

1

1 2

[2010.9.29]

56 3() 46 2 2

1. (「 」 23)

2.

[2010.9.29]

56 4() 46 2 3 (前
月)

[2010.9.29]

56 5(가) 49 2 1 "

1. 가 「 」 168 「 가가 」 5
6 ()
가

가. 49 2 1 2 가 가 (

")가 가
2 : 2
6 가 「 」 18
가 :

6

2.

가. 「 」 2 1
()

[2011.12.30]

56 6() 49 2 7

1. : 1 25

2. : 1 20

1

[2011.12.30]

56 7() , 31 , 33 , 37 40 , 40 6, 41 43 2 " "

" "

[2011.12.30]

56 8() 49 5 7 가 46
 (")
 가
 가 (49 5 3
 가)

[2011.12.30]

56 9() , (56
) 가
 가
 1. 5 가
 2. 8 9
 3. 11
 4. 12
 5. 16 3 4
 6. 16 6
 7. 16 8 2
 8. 16 10
 9. 16 11
 10. 22 2
 11. 23
 12. 27 3
 13. 28 3 2
 14. 33 가, 가,
 15. 37
 16. 40
 17. 47 2 가
 18. 49 2 가 ,
 19. 49 2 가
 20. 49 3 5
 21. 5 2
 22. 31
 23. 22408
 2

[2011.12.30]

57 () 50 1 2 2 .
[2011.4.4]

< 18574 ,2004.10.29>

1 () 2005 1 1 .

2 () 2

3 () 7 2
14 가

7

11

7 2 2006 12 31

1 6 1 .

4 ()
7 3 14

5 ()

6 (가) 78 1

가 54 1

가 47 1 가

7 ()

80 2 57 .

8 () .

12 1 " 57 " "

(" ") 13 1 2 " .

21 .

21 (.) (

" ") 10 , 20 29 , 31 33 , 36 41 ,

43 53 ()

" " " " , " " " " , " " "

(24)" , " " "

" , " " " " , " " " " , "

" " " , " " " " "

24 2 7 11 .

7. 14

가. 17 .

. 18 .

. 19 . .

. 21 . .

. 23

. 24 가

. 25

. 27

. 28

. 29

. 33 2 5 가, 가, .

가

. 34

. 35 가 .

. 37

. 39

11. 21

가. 10 , ,

. 45 3

. 49

37 1 가 , 2 .

2.

(" ")

가. 28 1

. 29

. 50 .

9 () .

< 19247 ,2005.12.30 >

2006 1 1

< 19422 ,2006.3.29 > ()

1 () 2006 4 1

2 ()

33 3 3 " ㄱ 122 " " ㄱ 140 "

41 1 4 " ㄱ 241 " " ㄱ 251 "

<26 >

< 19973 ,2007.3.27 >

() 2007 3 29 , 15 1 1 2008 1 1

()

30

< 20222 ,2007.8.17 > ()

1 ()

2 7

8 ()

6 1 6 " 18 11" " 26 "

9

< 20330 ,2007.10.17 > ()

1 () . < >

2 9

10 ()

3 3 " ㄱ 13 " " ㄱ 15 "

9 6 " ㄱ 15 " " ㄱ 12 "

12 1 1 "ㄱ 15 " "ㄱ 12
 " .
 28 1 5 "ㄱ 13 " "ㄱ 15 " .
 29 1 2 "ㄱ 13 " "ㄱ 15 " .
 43 "ㄱ 66 " "ㄱ 78 " .

11

< 20331 ,2007.10.23>()

- 1 () 2007 10 28 . < >
- 2 ()

2 1 3 가 "ㄱ 2 " "ㄱ 17 " .
 <32>

3

< 20874 ,2008.6.25>

- 1 () 2008 7 1 .
- 2 () 11 17 1 2009 .
- 3 () 가
- 30 100 2009 6 30
- 52 .

< 21590 ,2009.6.30>()

- 1 () 2009 7 1 . , 8 9 2010 1 1 .
- 2 (" 1) " 2 46 2011
- 6 30 가 .
- " 2 46 가(가
- 가 가가 가 가 .
-) () , 2011 6
- 30 가
- 3 (" 1) " 32 1
- 15 .

4 (「 」) 「
 」 40 2
 「 」 40 2 가

5 (「 」) 「 」 13 1 2
 「 」 13 1

6 (「 」)

7 (「 」) 「 」 9 5

8 (「 」)
 1

9 (「 」) 「 」 38 2 2 가
 가 5

「 」 38 2 2

< 22003 ,2010.1.27 >

1 () 2010 2 1

2 3

4 ()

13 " 「 」 12 1 " " 「 」

9 1 " .

<45>

5

< 22269 ,2010.7.12 >

1 () . < >

2 () <16>

<17>

2 1 2 . 3 가 , 11 1 1 . 2 , 13 , 32 2 , 33 3 4 ,
 40 6 , 52 2 57 1 . 2 . 3 " " "

"
 10 3 57 4 " " " "
 40 5 2 2 " " " "
 46 4 " " " "
 <18> <136>

< 22408 ,2010.9.29>

1 () 2011 1 1 . , 2 2

2 () 2 2

100 115

「 」 9

16 , 「 」 31 1 1 (

" ")

2013

- 1.15

1

1

가

1

3 () 7 3

4 () 15 1 1 2011

5 () 17 3 2011

6 ()
17 1 1 3

7 () 33 3

1

8 ()

34 2

9 ()

39 2

2. ㄱ

ㄴ 50

< 22807 ,2011.3.30 >

2011 4 1

< 22826 ,2011.4.4 >

1 ()

2 ()

2

< 23282 ,2011.11.1 >

1 () 2011 11 25 . < >

2 5

6 ()

2 1 2 " 2 5 " " 2 7 "

6 1 1 "ㄱ ㄴ 2 5 " "ㄱ ㄴ 2 7 "

< 23466 ,2011.12.30 >

1 () 2012 1 1 . , 56 5 56 7 2012

1 22

2 (가)

56 5

2012 1 22

[별표 1] <개정 2010.9.29>

사업 규모별 산재보험료율 증감비율(제18조제1항 관련)

구 분		사업 규모별 산재보험료율에 대한 증감비율			
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료액의 백분율(보험수지율)	건설업 및 별목업종 제외한 사업	상시근로자수 1,000명 이상	상시근로자수 150명 이상 1,000명 미만	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 150명 미만	상시근로자수 20명 이상 30명 미만
	건설업 중 일괄적용사업	총공사실적액 2,000억원 이상	총공사실적액 300억원 이상 2,000억원 미만	총공사실적액 6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	총공사실적액 4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
5%까지의 것		50.0%를 인하한다	40.0%를 인하한다	30.0%를 인하한다	20.0%를 인하한다
5%를 넘어 10%까지의 것		48.0%를 인하한다	38.4%를 인하한다	28.0%를 인하한다	18.4%를 인하한다
10%를 넘어 20%까지의 것		42.0%를 인하한다	33.6%를 인하한다	24.5%를 인하한다	16.1%를 인하한다
20%를 넘어 30%까지의 것		36.0%를 인하한다	28.8%를 인하한다	21.0%를 인하한다	13.8%를 인하한다
30%를 넘어 40%까지의 것		30.0%를 인하한다	24.0%를 인하한다	17.5%를 인하한다	11.5%를 인하한다
40%를 넘어 50%까지의 것		24.0%를 인하한다	19.2%를 인하한다	14.0%를 인하한다	9.2%를 인하한다
50%를 넘어 60%까지의 것		18.0%를 인하한다	14.4%를 인하한다	10.5%를 인하한다	6.9%를 인하한다
60%를 넘어 70%까지의 것		12.0%를 인하한다	9.6%를 인하한다	7.0%를 인하한다	4.6%를 인하한다
70%를 넘어 75%까지의 것		6.0%를 인하한다	4.8%를 인하한다	3.5%를 인하한다	2.3%를 인하한다
75%를 넘어 85%까지의 것		0	0	0	0
85%를 넘어 90%까지의 것		6.0%를 인상한다	4.8%를 인상한다	3.5%를 인상한다	2.3%를 인상한다
90%를 넘어 100%까지의 것		12.0%를 인상한다	9.6%를 인상한다	7.0%를 인상한다	4.6%를 인상한다
100%를 넘어 110%까지의 것		18.0%를 인상한다	14.4%를 인상한다	10.5%를 인상한다	6.9%를 인상한다
110%를 넘어 120%까지의 것		24.0%를 인상한다	19.2%를 인상한다	14.0%를 인상한다	9.2%를 인상한다
120%를 넘어 130%까지의 것		30.0%를 인상한다	24.0%를 인상한다	17.5%를 인상한다	11.5%를 인상한다
130%를 넘어 140%까지의 것		36.0%를 인상한다	28.8%를 인상한다	21.0%를 인상한다	13.8%를 인상한다
140%를 넘어 150%까지의 것		42.0%를 인상한다	33.6%를 인상한다	24.5%를 인상한다	16.1%를 인상한다
150%를 넘어 160%까지의 것		48.0%를 인상한다	38.4%를 인상한다	28.0%를 인상한다	18.4%를 인상한다
160%를 넘는 것		50.0%를 인상한다	40.0%를 인상한다	30.0%를 인상한다	20.0%를 인상한다

는 같은 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1항제4호

비고: 위 표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 중 법 제11조, 제12조, 제16조의10, 제17조 및 제19조의 위반행위는 그 위반횟수를 산정할 때 각각 별개의 행위로 본다.

[별표 2] <개정 2011.4.4>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57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(법 제11조, 제16조의10제1항·제2항, 제17조 및 제1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)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.

나.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·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
- 3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4) 위반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·벌금·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
- 5)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
- 6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다.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
- 2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	2차	3차 이상
가. 법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, 법 제12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, 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, 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	법 제50조 제1항제1호	100만원	200만원	300만원
나. 법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50조 제1항제2호	근로자 1인당 5만원, 100만원한도	근로자 1인당 8만원, 200만원한도	근로자 1인당 10만원, 300만원한도
다.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	법 제50조 제1항제2호	100만원	200만원	300만원
라. 법 제36조에 따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	법 제50조 제2항	10만원	30만원	50만원
마. 법 제44조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관계 서류를 제출한 경우	법 제50조 제1항제3호	100만원	200만원	300만원
바.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또	법 제50조	100만원	200만원	300만원